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3 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김원이・이인영・남인순

박홍근 • 기동민 • 이재정

김남국 • 류호정 • 맹성규

양이원영 · 오영환 · 이병훈

이수진 • 이원택 • 최종윤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"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"에게는 "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"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, "무면허 의료행위를 교 사한 자"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 지 않고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 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5항,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,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및 제87조의 2제5호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5항 중 "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"를 "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"로 한다.

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의료인 중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링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

제6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06 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 ① ~ ④ (생 략)	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의료인</u> ,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⑤ <u>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</u>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의료 인 중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 위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 보건복지
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
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
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
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
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
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
- 6. ~ 10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제87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· 2. (생 략) <신 설>

제66조(자격정지	등) ①

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6. ~ 10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7조의2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(2)	 	 	 	 -
	 	 	 	 - —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
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

하게 한 자